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361
----------	------

2025년 12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1. 제안이유

- 기금 운영부서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 2. 28.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와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심의위원 변경 (안 제6조제1항제2호)
 - 공무원 위원 중 ‘청사이전추진단장’의 삭제
- 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6조제4항)
 -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 시행일 기준 설정 (안 부칙)
 - 동 조례안은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 후인 2026. 3. 1. 부터 시행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61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과 간사, 기금관리공무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청사이전추진단은 2026년 2월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의 건립과 이전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자 운영 중인 교육행정국 소속 한시기구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2제2항에¹⁾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참고로 본문에서 언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舊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기준 39,937m²)로 조성 중인 공공청사로,²⁾ 2025년 12월 1일 기준 신청사 건립공사의 공정률이 99%에 달해³⁾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해당 부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⁴⁾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존속할 예정에 있고,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될 계획에 있습니다.⁵⁾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 청사이전추진단 설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⁶⁾ 동 조례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② 교육행정국에 청사이전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2025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번 참조.

3) 서울시교육청 신청사건립누리집, 공정현황(2025.12.1. 기준일자)

<https://www.sen.go.kr/sen/newsen2026/index.do> (검색일 2025-12-09)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제8692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의2제2항의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5.23.>

5) 신청사 이전 업무협의체 운영 계획(안) (2025.2.,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8호, 2025.10.20. 제출,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2조의2에⁷⁾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당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등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 만료에 맞춰서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간사의 지정,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담당할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청사이전추진단장”을 삭제하고, 해당 위원회의 간사를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교육행정국장”과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에서 “총무과장”과 “신청사 건립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안 부칙에서 개정 조례의 시행 시기를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2026년 3월 1일로 설정함으로써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이전추진단과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 기한,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추진 경과, 신청사 입주 등과 연계한 사무 이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 시기나 내용 등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덧붙여 안 부칙이 정하는 조례안 시행 시기(2026년 3월 1일) 역시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2026년 2월 28일)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7)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예산담당관, 청사이전추진단장” 을 “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을 “신청사 건립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을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
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u>예산담당관</u> , 청사 <u>이전추진단장</u> 으로 한다.	2. ----- ----- <u>예산담당관</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청사 이전기획담당사무관</u> 으로 한다.	④ ----- ----- <u>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u>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
1. 기금운용관 : <u>교육행정국장</u>	1. ----- : <u>총무과장</u>
2. 기금출납원 : <u>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u>	2. ----- : <u>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